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분석·평가 위탁근거를 마련하고,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폭력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일정을 현실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‘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’의 분석·평가 위탁 근거 마련(안 제4조제3항 신설)

나. ‘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’ 수립 관련 일정 변경(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,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)

▶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일	(당초) 매년 10월 31일 → (변경) 매년 11월 30일
▶ 당해 연도 시행계획 제출일	(당초) 매년 11월 30일 → (변경) 매년 1월 31일
▶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일	(당초) 매년 4월 30일 → (변경) 매년 1월 31일
▶ 추진실적 분석평가 결과 통보일	(당초) 매년 10월 31일 → (변경) 매년 11월 30일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5. 30. ~ 6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(사전 규제심사 완료)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0월 31일”을 “11월 3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매년 11월 30일”을 “매년1월 31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4월 30일”을 “1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0월 31일”을 “11월 30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·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을 위해 매년 <u>10월 31일</u> 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.	제3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11월 3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<u>매년 11월 30일</u> 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매년1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4조(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 등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<u>4월 30일</u> 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(이하 “추진실적”이라 한다)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4조(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1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 분석·평가 결과를 매년 <u>10월 31일</u>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 <u><신 설></u> ③ (생 략)	② ----- ----- ----- <u>11월 30일</u> ----- ----- -----. ③ <u>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·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06